

2015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토론회 종합보고서



기조발표

디지털시대, 언론중재법 과제와 전망

김 수 일

(서울 제8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디지털시대, 언론중재법 과제와 전망

◆

김 수 일

서울 제8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미디어 환경 변화와 언론 조정·중재 제도

10년 전 당시 뉴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에 포함하는 언론중재법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즉 포털 등도 조정 및 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미흡하나마 언론피해구제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생태계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다루며 자라난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로 성장해 가면서, 국민들의 미디어 이용 모습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양이 급증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미디어가 융·복합되면서 언론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는 수많은 보도나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보내거나 얻을 수 있는 반면, 잘못된 보도나 정보가 순식간에 퍼져나가 축적되며 검색·노출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따른 국내·외 판결 동향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급변은 세계 미디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역시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대의 유력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조차도 포털이 매개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과 전파력은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뉴스를 생산한 언론사의 지명도나 영향력과 관계없이 포털이 매개하는 기사는 상당한 파급력을 지니게 됩니다. 디지털화된 언론사의 기사는 포털로, 개인 블로그로, 인터넷 카페로, SNS로 전파되며 포털의 검색기능을 통하여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리는 댓글 또한 여론의 지표로서 민심의 동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의 흐름은 법원의 판결을 통한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일부 반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3. 3. 28. 선고된 판결(2010다60950)에서 인격권에 근거한 기사 삭제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미 대법원은 2009. 4. 16. 선고한 판결(2008다53812)에서 포털사업자에 대하여 기사선별·게재행위와 포털이 제공하는 게시공간에서의 게시물 관리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2013. 10. 10. 선고한 판결(Delfi AS v. Estonia)에서 포털사업자는 독자의 모욕적 댓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사삭제청구권이나 잊혀질 권리, 포털의 불법행위 책임론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른 피해구제의 필요성에 대응한 사법기관의 능동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해석과 적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 대두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재판이 아닌 협상과 화해,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대부분의 민사분쟁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또한 이러한 해결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만큼은 비용이 들지 않고 단기간 내에 해결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1981년에 설립되어 올해 34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건을 신속·적정하게 심리·처리하여 온 제도 운용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보편적 정당성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역할과 성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제도적 우수성에 대해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언론분쟁은 보다 신속하고, 또한 실효성 있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의 속성상 잘못된 언론보도가 빠른 속도로 인터넷 곳곳에 퍼질 뿐만 아니라 손쉽게 검색되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취지 및 배경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언론피해영역은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따라 확장되고 있으나, 구제방안은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새로운 언론피해양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시하는 개정안은 아직까지 각국의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관련 판결례와 지배적인 학설을 반영한 것

이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피해양상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직접 접하고,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계자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한 산물입니다.

개정안은 첫째,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인격권에 근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반영하여 인터넷 상의 인격권 침해상태의 정지 또는 제거 등을 요청하는 권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잘못된 기사의 삭제·수정·보완이 가능한 실효적인 피해구제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둘째,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이미 피해구제가 된 잘못된 언론보도가 소위 펄클 등으로 계속 전파됨으로 발생하는 피해의 구제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국민들은 잘못된 원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으로 전파된 것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쉽고 빠르게 침해받은 인격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번 개정안은 기사 내용에 의한 피해자가 그 기사의 댓글로 인한 피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피해를 통합하여 일회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넷째, 언론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언론사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종래 언론중재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한 언론피해 구제의 사각지대 발생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즉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뉴스플랫폼과 같은 유사 뉴스서비스 전자간행물에 대해서도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사회적 의미

피해가 발생하고 고통 받는 국민이 있다면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언론중재위원회를 비롯한 공적 기관의 당연한 임무이며 역할임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새로운 피해양상에 대해 눈감고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디지털 시대에 언론보도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로 침해받을 수 있는 국민의 인격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진일보한 언론피해구제 제도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인터넷 상의 언론피해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게 신선한 선례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과 제도가 사회의 변화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괴리되어 있다면 법치주의의 의미는 퇴색하기 마련입니다. 법률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건전한 상식에 입각하여야 하고, 건전한 상식은 그 사회의 변화하는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과 건전한 상식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법률과 제도를 만들고 다루는 사람들의 임무일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언론중재법이 우리 국민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하도록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